

수원지방법원 2021. 4. 29 선고 2019가단543614(본소), 2019가단552991(반소) 판결 [원고
작업자 인건비 및 손해 배상금 청구(본소) , 공사대금(반소)]

전 문

원고 작업자 인건비 및 손해 배상금 청구
2019가단552991(반소) 공사대금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환

피고(반소원고) B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세진

변론 종결 2021. 4. 15
판결 선고 2021. 4. 29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86,675,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9. 21.부터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,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

17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25.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

송달일까지는 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○ 원고는 2019 . 1. 8. 피고와 사이에 'CFBC 보일러의 제작 및 설치공사'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하여 대금 225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공사기간 2018.12. 24.부터 2019. 3. 15.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,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.

제9조 : 대금 지불은 다음과 같다. 1) 계약금 : 계약이행증권(10%) 및 선급이행증권(이행각서로 대체한다) 예치 후 지불,10% 2) 중도금 : 기성에 의거 지불,80% 3) 잔금 : 원고 정기결제(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 지급),10% 단,계약이행증권및 선급이행증권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.

○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, 당시 아래 [표]의 항목 란 기재 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,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[표]의 비용(원) 란

기재와 같이 합계 12,658,75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이다.

매관성	항목	비용(원)	비고
1	FURNACE 리프팅 지그 작업	1,968,750원	피고 미של행분
2	FURNACE 외부 도색작업	1,960,000원	피고 미של행분
3	FURNACE 오일 수입태스트	3,340,000원	피고 미של행분
4	제작물 정리 및 마무리(최종검사 포함)	2,340,000원	피고 미של행분
5	제작물 상자 및 운송비 (추레라 1대, 트럭 2대)	3,050,000원	피고 미של행분 (상자는 제작장 오버헤드 크레인 사용)
합계 (부가세 별도)		12,658,750원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9. 2.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6명의 작업인원을 투입하는 등 피고의 공사 진행을 독려하였음에도, 피고는 2019. 5. 14. 이 사건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였고, 이에 원고는 자비를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.

그런데 피고는 발주사(주식회사 미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원고의 공사대금 수금을 방해하고 있는바,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작업자 6명의 4개월 간 인건비 102,500,000원과 수금 방해,영업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 67,500,000원의 합계 17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 건 공사가 지체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에게, 아노텐 탱크 제작 공사계약을 대금 26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,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25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각 도급하였고,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대금 35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의 멤브레인 자동용접 공사를 추가로 요청하였다.

피고가 위 각 공사항목 중 위 [표]의 항목란 기재 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, 원고는 그에 상응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314,600,000원[= (26,000,000원 + 225,000,000원 + 35,000,000원) × 1.1, 부가가치세 포함]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14,000,000원과 위 잔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13,924,625원(= 12,658,750원 × 1.1, 부가가치세 포함)을 각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86,675,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을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(원고는 최초 변론기일 이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, 원고의 본소 청구를 입증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다투겠다고 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도 막상 재개된 변론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던바, 위와 같은 원고의 소송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),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86,675,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민지